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7구합6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A

피 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군수

변 론 종 결 2017. 8. 24.

판 결 선 고 2017. 10. 19.

주 문

1. 피고가 2016. 6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,181,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,256,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가. 원고는 1976. 8. 25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고 한다)의 공동대표이사이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, 원고가 C의 발행주식 총수 407,750주 중 295,883주(72.56%)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. 12.경 D, E으로부터 각 35,352주, 35,515주 합계 70,867주(17.38%,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고 한다)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·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다.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조 제5항 전문, 같은 법 시행령(2015. 12. 31.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6. 5. 10.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5,181,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,256,460원(각 가산세 포함)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. 8. 16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위 심판청구는 2017. 3. 8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,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4. 12.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다시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일 뿐이어서, 원고가 D,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,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갑 제4 내지 2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가 C을 설립할 당시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이었으므로, 원고로서는 일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발기인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, ② 실제로 원고는 1998. 11. 30. 안산세무서장에 대하여 F, G, H 등 일부 발기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C의 일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던 점, ③ D, E은 1992.부터 2002.까지 C의 다른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 명의를 이전받거나, 원고의 주금 납입으로 인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후 원고는 2014. 12.경 D,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'명의신탁 해지 약정서'를 각각 작성한 후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점, ⑤ 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가 관리하는 D과 E 명의의 신한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행 계좌 및 원고 명의의 [redacted]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온 점,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 전액이 D과 E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고,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역삼세무서장은 위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며, 이에 원고가 위 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한편, D과 E은 위 배당금을 자신들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D과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, 그 후에 원고가 D,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서 말하는 '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, E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규

판사 정우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판사 권순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별지

관 계 법 령

▣ 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▣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12. 31.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1조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 등의 비율"이라 한다)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▣ 구 상법(1962. 1. 20.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95. 12. 29.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88조 (발기인)

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. 끝.